| | |
|---|---|
| 의안번호 | 제542호 |
| 의 결<br>연 월 일 | 2013년 10월 17일<br>(제324회) |

#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|---|
| 발 의 자 | 박종성 의원 외 6명 |
| 발의연월일 | 2013년 9월 16일 |

#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# (박종성 의원 대표발의)

| 의 안 번 호 | 542 |
|---|---|

발의연월일 : 2013년 9월 16일
발 의 자 : 박종성, 장선배, 노광기
김양희, 손문규, 최미애
최병윤 의원

## 1. 개정이유

국민권익위원회의 기금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일부내용을 보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(안 제11조의3)
-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 규정 신설

나.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내용 반영
- ‘자활공동체’를 ‘자활기업’으로 변경

## 3. 개정 조례안 : 붙임

## 4. 참고자료

○ 관계법령 : 별첨
○ 예산 수반(비용추계서) : 해당 없음
○ 집행기관 협의 여부 : 여
○ 입법예고 여부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 조례 제　　　호

#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3(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)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

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.

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.

제5조, 제8조, 제9조, 부칙 제2조 중 ‘자활공동체(가)’를 ‘자활기업(이)’으로 한다.

## 부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제5조(지원대상)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·기관·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.<br>3. 법 제18조 및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」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 | 제5조(지원대상)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<br>3.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자활기업 |
| 제8조(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) ① 자활공동체 등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 등의 사업규모,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제11조의2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.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<br>② 자활공동체 등에 대한 자금의 대여는 1억원 이내로 한다. 단, 자활공동체의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<br>③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 등은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,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, | 제8조(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) ① 자활기업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자활기업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<br>② 자활기업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자활기업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<br>③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자활기업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|

| | |
|---|---|
| 최대 3회까지(최장 6년) 연장해 줄 수 있다. | - - - - |
| ⑤ 도지사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. | ⑤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자활기업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|
| 제9조(이차보전)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4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3%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. | 제9조(이차보전) ① 자활기업이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|
|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. | ②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자활기업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|
|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. | ③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자활기업이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|
| <신 설> | 제11조의3(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)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<br>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|

| | |
|---|---|
| | 있다.<br>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. |
| 부칙(2012. 7. 16 조례 제3482호)<br>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융자받은 자활공동체 등의 융자금 상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 | 부칙(2012. 7. 16 조례 제3482호)<br>제2조(경과조치)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<br>자활기업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|

# 관 계 법 규

## 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
제18조(자활기업)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상의 사업자로 한다.

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, 제15조의3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
2. 국유지·공유지 우선 임대
3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
4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
5.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

④ 그 밖에 자활기업의 설립·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[전문개정 2012.2.1]

부칙 <법률 제11248호, 2012.2.1>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5조의2제1항제3호, 제15조의2제1항제5호, 제15조의3,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